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7

발의연월일: 2024. 6. 11.

발 의 자:이연희·조 국·정성호

임오경 · 김성환 · 이병진

황 희 • 김유덕 • 서미화

박홍배 · 홍기원 · 어기구

서영교 · 임미애 · 민형배

박 정・이정문・정준호

박상혁 • 허종식 • 강준현

한민수 · 김한규 · 모경종

전진숙 • 문진석 • 최민희

김준혁 · 노종면 · 정동영

이건태 · 정진욱 · 박수현

김용만 • 위성곤 의원

(35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의 실시가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이고 그 주기 또한 불명확하여 실태조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와 비교하여, 정부의 실태조사 관련 법적 근거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서는 실태조사를 의무사항으로 두고 주기를 명시하고 있는 상황임(온누리상품권의 경우에도 3년을 주기로 실태조사를 의무화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한 다른 법률의 사례에서와 같이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 권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법률 제 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2. 주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3.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 유통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할 수 있다"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신 설>	제3조의2(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기본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활성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정책에관한 사항 2. 주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유통 및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를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

제15조의2(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저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생략)

<신 설>

	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15조의2(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 ①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하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